

[별표 6] <개정 1995.8.31>

시공업의 시설기준(제20조관련)

종목	품목명	시설명	보유대수	기술인력
제1종	강철제보일러 주철제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 보일러 (축열식전기 보일러)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	1. 수질분석설비 2. 수압시험기 3. 기밀시험설비 4. 자기압력기록 계 5. 가스누설검지 기 6. 절연저항측정 기 7. 사무실	1대이상 1대이상 1대이상 1대이상 1대이상 1대이상 30㎡이상	1. 전문대학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열관리기사·기계분야기사·보일러기능장 또는 기계분야기능장 1인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일러기능사 1급 또는 보일러시공기능사 2급 1인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사 1인이상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능사 1인이상
제2종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 보일러 (축열식전기 보일러)	1. 수압시험기 2. 절연저항측정 기 3. 사무실	1대이상 1대이상 18㎡이상	1. 다음 각목의 자격자중 1인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일러기능사 1급·보일러시공기능사 2급 또는 제4종의 기술인력자격자 나. 다음의 자격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열관리기사·열관리기능사 2급·보일러취급기능사 2급 : 배관분야기능사(공업배관기능사 2급을 제외한다)·온돌기능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기능사 1인이상 3. 다음 각목의 자격자중 1인이상 가. 제1호의 기술인력자격자·제3종의 기술인력자격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p>한 보일러취급기능사 2급·열관리기능사 2급 또는 온돌(온수온돌에 한한다)기능사보</p> <p>나. 보일러시공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 1인 이상</p>
제3종	용량 5만 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	1. 수압시험기 2. 사무실	1대이상 12㎡이상	<p>다음 각목의 자격자중 1인이상</p> <p>가. 제2종제1호의 기술인력자·국가기술자격법 의한 온돌기능사</p> <p>나. 다음의 자격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온수온돌에 한한다)기능사보·보일러시공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p>
제4종	태양열집열기 용량이 5만 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온수보일러	1. 수질분석설비 2. 수압시험기 3. 사무실	1대이상 1대이상 18㎡이상	<p>다음의 자격자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 1인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열관리기사·보일러기능사 1급·보일러시공기능사 2급·보일러취급기능사 2급 및 열관리기능사 2급</p>
제5종	요업요로 금속요로	당해품목의 제조업 등록기준과 같음		

- 비고:
- 제1종시공업의 시설명란의 제3호 내지 제5호 및 기술인력란의 제3호는 가스용 보일러(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의 시공자에 한한다.
  - 제1종시공업의 시설명란의 제6호 및 기술인력란의 제4호와 제2종시공업의 시설명란의 제2호 및 기술인력란의 제2호는 축열식전기보일러의 시공자에 한한다.
  - 제2종시공업의 품목명란의 온수보일러에는 검사대상기기를 제외한다.